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27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전진숙・박희승・서미화

김선민 • 이수진 • 백혜련

임호선・김 윤・남인순

임광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 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·강화할 필요가 있음. 참고로,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 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이에 현행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 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 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(안 제19조의3 신설).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 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·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(안 제19조의4 신설).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3(노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 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 가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를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 다만, 추가로 산입하는기간은 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.
  - ③ 가족의 범위,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추가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의4(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 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

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 다만,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20개 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며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(이하 "간호·간병등"이라 한다)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: 간호 ·간병등을 제공한 기간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(이하 "보호수당" 이라 한다)을 지급받는 자: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
- 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.
- ③ 가족의 범위, 간호·간병등을 제공한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추가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중 "제19조"를 "제19조, 제19조의3 및 제19조의 4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적용례) ①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

비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으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9조의3(노인돌봄에 대한 가입
	기간 추가 산입) ① 「노인장
	기요양보험법」 제24조에 따라
	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
	에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
	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
	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
	가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
	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
	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
	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렁
	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
	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장기
	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
	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 다
	만,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2
	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	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
	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
	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.
	③ 가족의 범위, 기간의 구체적
	인 산정 방법 등 추가 산입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<신 설>

정한다.

제19조의4(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제1 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며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(이하"간호·간병등"이라 한다)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: 간호·간병등을 제공한 기간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제2 항에 따른 보호수당(이하 "보 호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받 는 자: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

제51조(기본연금액) ① 수급권자 저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(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)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.

- 1. (생략)
- 2.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

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
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
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.
③ 가족의 범위, 간호ㆍ간병등
을 제공한 기간의 구체적인 산
정 방법 등 추가 산입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<u>다.</u>
∥51조(기본연금액) ①
1. (현행과 같음)
2

총 7	<b>가입</b> 기	간으	로 니	눈	금	액.
다만,	다음	각	목에	따	라	산
정하여	여야 경	하는	금액	슨	ユ	금
액으:	로 한다	7.				

가.・나. (생 략)

다. <u>제19조</u>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

②・③ (생 략)

·
<u>.</u>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. <u>제19</u> 조, 제19조의3 및 제
19조의4
②・③ (현행과 같음)